

주요 손금항목에 대한 이해



변석준 이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회계사
 Tel. 02-6676-2490
 sbyun@deloitte.com

목차	
1	총설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	손익귀속시기 및 자산의 취득가액
4	주요 익금항목에 대한 이해
5	주요 손금항목에 대한 이해
6	자산에 대한 평가 및 고정자산 감가상각
7	접대비와 기부금
8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
9	준비금, 지급이자
10	부당행위계산부인
11	법인세 계산, 신고 및 납부
12	기타(자본거래와 세무, 연결납세제도의 이해 등)

이번 호에서는 '주요 손금항목'에서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세법상 손금의 정의 및 대표적인 손금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손금의 개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손금 중 급여·상여금·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볼 것이다. 상기 인건비 외에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접대비, 기부금, 대손금 등 여러 가지 손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들이 있으나, 다음 호부터 10회차까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법인세법상 손금을 구성한다.

법인세법에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항목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손금에 해당한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에서 손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손금항목으로서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매입가액 및 제조원가와 부대비용이 있다. 이는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라는 계정과목으로 표시되는 금액이다. 이러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 외에도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인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급여·상여·퇴직금·복리후생비 등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 기계장치와 같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 차입금 이자, 거래처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인 대손금, 세금과 공과 등의 손금항목이 있다.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이나,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된 것이 있다.

상기에 열거된 대표적인 손금항목들에 대해서는 다음 호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고, 이번 호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다. 급여·상여·퇴직금·복리후생비 등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부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손금불산입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급여라 함은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¹⁾가 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상근임원에 비해서 높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다른 비상근임원보다 더 지급받는 급여, 즉 차액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²⁾이라 한다.

물론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동일 직급 또는 직위에 있는 특수관계 없는 자보다 더 높은 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부 상여금 및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여금 역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나, 임원에게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따라서 지급기준에 의하면 임원에게 1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150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지급기준 내 금액인 100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인 50원은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임원 및 사용인을 불문하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세무상 손금불산입을 하기 이전에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므로 회계와 세법에서 모두 손금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는 세무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장려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즉, 회계상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다.

- ①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이익처분 상여금 중 우ரி사 주조합을 통하여 자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법 소정의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 ②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이익처분 상여금 중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부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다음의 손금한도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 ②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총급여액(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 제외)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직장 내 체육대회 관련 경비(직장체육비), 직장 내 연예 오락회 개최 관련 경비(직장연예비), 회식비, 국민·건강·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집의 운영비,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의 복리

-
- 1) 법인의 주주, 법인의 임원 등 법인과 가진 관계로 인하여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들에 비해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 이러한 관계를 말한다.
 - 2) 일반적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황과 다르게 거래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여러 종류의 불이익(위 사례의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등)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서는 제10회차에서 상세할 예정이다.

후생비도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 중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회식비의 경우, 2013년 2월 15일 이전에는 세법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후 포함되었다. 그렇다면 포함되기 이전에는 손금불산입하였는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나, 회식비용을 지출함으로써 회사가 세무상 불이익을 보게 된다는 말을 들은 독자들은 드물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 인건비의 손금산입여부를 잘 살펴보면, 세법상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유독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임원들이 회사의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러한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철저히 규제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및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에서 손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역시 손금이 아닌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의 납입이므로 익금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할인발행차금 역시 손금이 아닌 것이다. 즉, 손익 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의 경우, 세무상 익금 및 손금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손금불산입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령위반이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벌금·과료·과태료 및 가산금 등이 있다. 즉, 당해 벌금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는 법인세를 감소시키고, 법인세가 감소되면 벌금 등의 징벌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벌금 등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업무무관경비가 있다. 즉, 법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되는 경비들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나 접대비, 기부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지급이자 등이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되고 있다.

회계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에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상기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세무조정은 가산조정도 있고, 차감조정도 있으나, 실무에서 많이 접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대부분 가산조정, 특히 손금불산입항목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하기 목차와 같이, 다음 호부터 10회차까지 살펴볼 내용들을 보면 모두 회계상 비용 계상된 항목(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주제들이고, 대부분의 내용이 회계상 계상한 비용을 세법상 어떠한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지 또는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세법상 어떠한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하는지, 즉 가산조정에 대한 내용들이다.

목 차	
6	자산에 대한 평가 및 고정자산 감가상각
7	접대비와 기부금
8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
9	준비금, 지급이자
10	부당행위계산부인

